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스포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816호)

2023.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 스포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2. 6. 7.

다. 회 부 일 : 2022.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면서, 그 중 면세가 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 함)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면세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면세제도는 수입된 물품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것일지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보조기구 등은 기획재정부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스포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김예지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제91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 - 종교물품, 자선용품 등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신 설>	☐ 장애인 스포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장애인 스포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시각장애인등이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및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김예지의원안 2022. 6. 7. 발의(의안번호 15816)

☐ 현행 「관세법」 제91조¹⁾에서는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

1)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의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장애인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장애인 교육용 물품 등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장애인 스포츠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려는 개정안은 장애인 스포츠 물품에 대한 가격부담을 낮추어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 다만, 동 개정안 발의(2022년 6월 7일) 이후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2022년 9월 6일)되어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현재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 여기서 ‘스포츠용 보조기기’는 ‘경쟁적이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게임 또는 운동 경기에 단독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축구, 농구, 양궁, 볼링, 골프, 테니스 등 스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2)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가목(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를 말함³⁾.

문 의 처
02)6788-5161

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별표1]에 규정